금융위원회

보 도 자 료

보도	2016.5.12(목) 조간 이후	배포	2016.5.11(수)

책 임 자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안 창 국(02-2156-9900)	담 당 자	송 병 관 사무관 (02-2156-9898)
	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 오 용 석(02-3145-6700)		김 진 옥 자산운용총괄팀 부국장 (02-3145-6702) 조 철 자산운용인허가팀장 (02-3145-6725)

제 목 :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

■ **2단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**
- **'16.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 접수**
- **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(수탁고 인정범위 확대)**
- **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(수탁고 5조원 → 3조원)**
- **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**

Ⅰ. 추진배경

□ **현행 자산운용사 인가정책**('14.7월)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**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** 자산운용산업의 **역동성과 경쟁을 제약**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 필요

Ⅱ. 개선방안

◇ **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합리화**를 통해 자산운용사 진입 활성화 및 경영 자율성 증대로 자산운용산업 내 **경쟁 및 혁신을 촉진**

1 **(진입) 사모펀드 자산운용사** 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

○ **(현행)** 사모운용사 진입제도가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되어 진입이 다소 자유로워졌으나, 아직 증권회사의 **겸영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**

* '15.11월 「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」에서 증권회사에 사모펀드운용업 겸영(In-house)을 허용하기로 발표

구 분	진입 제도	운 용 자 산
'15.10월 이전	인가	증권·부동산·특별자산 중 택1 하여 진입 * 증권사모펀드 운용사의 실물(부동산, 특별자산) 사모운용업무, 실물사모운용사의 증권사모운용업무 추가는 제한
'15.10월 이후	등록	증권·부동산·특별자산 모두 가능

○ **(개선)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*** 마련 후 '16.2/4분기 중 **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신청을 접수**

* 증권업/자산운용업간 사무공간분리, 준법감시부서 별도 설치 등

2 **(공모사 전환)** 선별적 단종 공모펀드 자산운용사 전환 정책은 유지하되 **일부 불합리한 기준 개선**

○ **(현행)** 사모펀드 운용 자산운용사 중 **충분한 업력과 평판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만 단종공모펀드 운용사 진입을 허용**

구 분	업 력	수탁고 요건	사회적 신용 요건
① 증권사모 → 공모증권펀드	운용사 3년	증권펀드 3천억원	최근 2년 동안 금감원 검사를 받고 기관 주의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
② 실물사모 → 공모실물펀드		실물펀드 3천억원	
③ 헤지펀드 → 공모증권펀드		전체 수탁고 1조원 (헤지펀드 0.5조원)	

○ **(개선)** 운용사 종류별 성장경로를 통합하고 **업력, 수탁고요건, 사회적 신용 요건을 일부 완화**

* 업력 : 일임사·운용사 경력 합산 3년(운용사 1년 경력은 필수)
* 수탁고 : 각 펀드 종류별 수탁고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수탁고(일임 포함)로 3천억원 계산
* 사회적 신용 요건 : 2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

3 **(종합사 전환) 종합자산운용사**로의 전환 기회 대폭 **확대**

○ **(현행)** 단종공모운용사로서 **5년 경력 5조원 수탁고**를 갖춘 자

○ **(개선)** 일임사 포함 **5년 경력**(1년 운용사), **수탁고 3조원**(일임 포함)

4 **(1그룹1사 원칙)** 1그룹1사 원칙을 **단계적으로 완화**

○ **(현행)** 한 그룹에는 운용사를 **원칙적으로 1개만 보유**하도록 하고, **인가 단위별로 업무를 특화**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

○ **(개선) 사모운용사**에 대해서는 **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즉시 폐지**하고, **공모**운용사는 **업무특화 인정범위*를 확대**

* 예) Active 펀드 vs Passive 펀드, 가치주 펀드 vs 성장주 펀드 등

- 1그룹 1운용사 원칙 완화에 맞추어 그룹 내 **복수 운용사간 업무위탁을 활성화**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

Ⅲ. 기대효과

□ **인가정책 완화**로 다양한 **자산운용사 시장진입,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**되어 자산운용산업 내 경쟁과 혁신이 촉진

* ① 사모펀드 운용사 신설 : 현재 12개사 등록 심사 진행 중
② 증권회사 사모펀드운용업 진입 : 15개사 내외 준비 중
③ 공모펀드 전환이 가능한 회사 : (기존) 6개사 → (개선) 11개사
④ 종합운용사 전환이 가능한 회사 : (기존) 3개사 → (개선) 6개사

□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운영되고,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에 특화된 **자산운용그룹 출현기반이 조성**

※ **별첨 : 1.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**
2.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 체계도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